

공개용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  
중간보고서(수정본)  
(조사번호 : 구제 23-2024-3호)

2025. 1.

무역조사실



## < 목 차 >

I. 재심사 개요 .....	1
1. 요청인 및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 .....	1
2. 재심사대상물품 .....	3
3.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간 동종물품 여부 .....	6
4.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요청 및 검토 .....	8
5.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	12
6. OPP필름 산업 현황 및 수급현황 .....	15
7. 비밀취급 여부 검토 .....	19
II.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	22
※ 덤핑조사 진행중	
III.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	23
1. 재심사대상물품의 누적적 평가 여부 .....	23
2.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	26
3.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산업피해의 전망 .....	41
4.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검토종합 .....	45
IV.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46
1. 덤핑률 수준 .....	46
2.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	46
3.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46

### [참고자료]

참고 OPP필름 2차 재심 산업피해 조사경과 .....	47
--------------------------------	----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 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은 아래와 같이 기준년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 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기준년도 값 :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의 경우에는 %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 I. 재심사 개요

### 1. 요청인 및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

#### 가. 요청취지

- '24. 2. 20. (주)삼영, (주)필맥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및 (주)화승케미칼은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연신필름 (Oriented Polypropylene Film, 이하 “OPP 필름”이라 함)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동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연장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함

#### 나. 요청인

- 요청인: (주)삼영, (주)필맥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주)화승케미칼  
- 대리인 : 법무법인 학훈(변호사 김학훈), 우리회계법인(회계사 한동운)

('23년 기준)

신청인		(주)삼영	(주)필맥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주)화승케미칼
구분	신청인	(주)삼영	(주)필맥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주)화승케미칼
설립일		1959.4.10	2003.5.15	2012.7.1	2018.2.1
대표자		이석준	김경택	민남규	현석호
주소	본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13층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170	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106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87-21 장천빌딩 6층
	공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35번길 56	상동	상동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항리 98-7
자본금(억원)		170	175	20	10
매출액(억원)	전체	853	885	1,011	1,496
	동종물품	xxx	xxx	xxx	xxx
주요 생산제품		BOPP필름, CPP필름, PVC랩	BOPP필름, CPP필름, SPP필름	BOPP필름, NYLON필름	BOPP필름, PET필름
종업원수		xxx	xxx	xxx	xxx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24.6월)

다. 피요청인(공급자)

<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현황 >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요청인 제시 덤핑률(%)
		원심	1심	
중 국	슈강(Jiangsu Shukang Packing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3.89	3.05	6.15
	테크로 (Guangdong Decro Package Films Co., Ltd.) 및 그 관계사	4.74	2.15	
	귀평(Anhui Guofeng Plastic Industry Co., Ltd.)	4.17	5.30	
	중산(Zhongshan New Asia Adhesive Products Co., Ltd.)	25.04	25.04	
	킨리드(Zhejiang Kinlead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및 그 관계사	4.38	25.04	
	쿤린(Suzhou Kunlene Film Industries Co., Ltd.) 및 그 관계사	11.67	25.04	
	그 밖의 공급자	7.40	7.40	
인도네 시아	인도폴리(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	4.43	3.19	11.89
	아르가(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	5.98	3.46	
	트리아스(PT Trias Sentosa Tbk.)	4.83	3.57	
	그 밖의 공급자	5.98	5.98	
태국	타이필름(Thai Film Industries Public Co., Ltd.)	10.55	10.55	15.73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 Ltd.)	3.48	2.60	
	그 밖의 공급자	10.55	10.55	

○ 공급자 대리인

- (중국) 귀평 - 법무법인 광장/ 슈강, 테크로 - 리인타
- (인도네시아) 인도폴리, 아르가, 트리아스 - 리인타
- (태국) 에이제이피 - 정동 회계법인

라. 덤핑방지조치 경과

- '13.12.20: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원심)
  - 부과기간: '13. 12. 20.~'18. 12. 19.(5년)/덤핑방지관세율: 3.48%~25.04%
- '19. 8. 23: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1차 재심)
  - 부과기간: '19. 8. 23.~'24. 8. 22.(5년)/덤핑방지관세율: 2.15%~25.04%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3. 1. 1. ~ '23. 12. 31.
- 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 1. 1. ~ '23. 12. 31.

2. 재심사대상물품

가. 품명 : Oriented Polypropylene Film, “OPP 필름“

- 관세품목분류(HSK) : HSK 3920.20.0000, 3921.90.2000
- 관세율 : 중국 (한-중 FTA) 0%, 인도네시아·태국 (한-아세안 FTA) 0%
  - \*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 6.5%

나. 재심사범위 :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mu\text{m}$ ) 이상인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 폴리프로필렌을 용융, 압출, 냉각과정을 통해 일축<sup>1)</sup> 또는 이축<sup>2)</sup>으로 연신하여 제조한 무색·무취·무미하고 투명성과 광택성이 있는 필름

1) 길이 방향으로 연신(늘림) 하는 것  
 2) 폭 방향으로 연신(늘림) 하는 것

다. 물리적 특성

- 무연신 필름에 비해 인장강도, 탄성률이 높고 광택, 투명성, 내열성, 차단성이 우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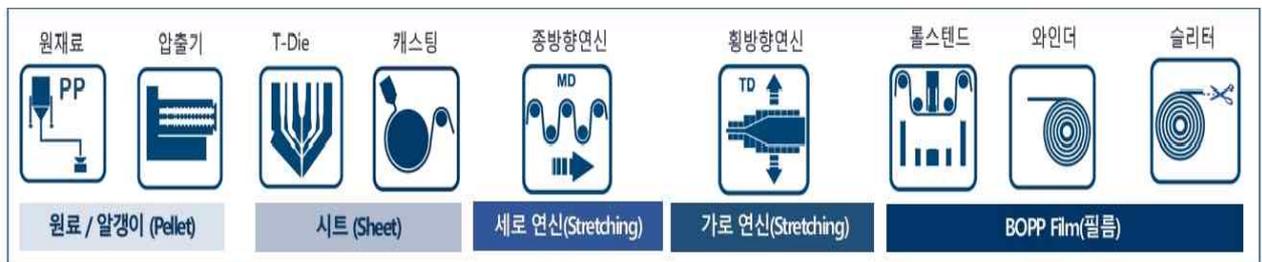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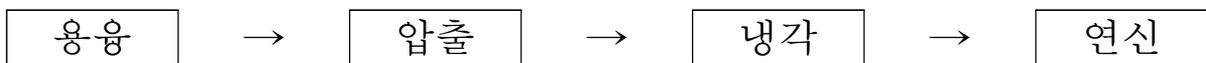
라. 용 도

-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 주요 OPP 필름의 종류별 용도 >

종류	용 도	설 명	두께(μm)
일반 필름	문 구 용	문구용, 앨범용, Sheet Protect	30, 40, 50
	섬유포장용	의류, 빵포장, 꽃싸개, 액세서리	30, 40, 50
	테이프용	접착 테이프용 (투명&유색)	30, 40, 50
	인쇄용	각종 식품 포장용	20, 30
	종이 합지용	책커버, 쇼핑백, 카달로그	15
복합 필름	양·단면 열접착 걸싸개용	빨대 포장, 스낵 포장, 라벨용	20, 22, 25, 30, 40
펄 필름	일반용	고급 포장지, 병과류, 라벨용	30
무광 필름	무광 합지용	책커버, 쇼핑백, 카달로그	18
	무광 인쇄용	각종 식품 포장용	20
방담 필름	방담용	채소 싸개용	25, 30, 35, 40
합성지	합성지	라벨용, 명암지, 잉크젯	60, 70, 80, 90
증착 필름	진공 증착	야외 매트용, 과수원용	18, 20
	단면 열접착증착	스낵 등 식품포장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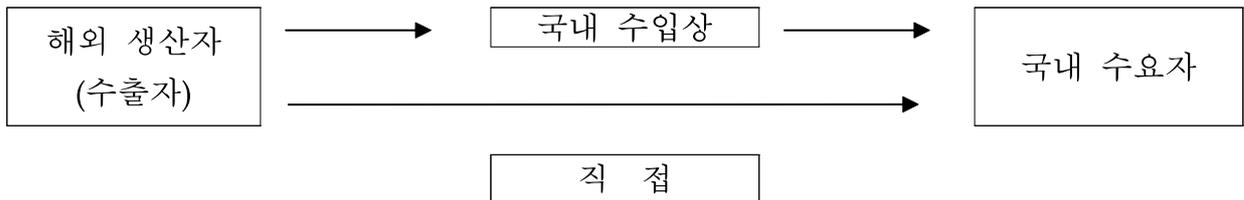
마.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 ① 원재료 투입 혼합 : 생산되는 필름의 목적에 맞게 원료탱크에 투입
- ② 압출 : 용융된 원재료를 균일하게 압출기를 통해 티다이(T-die)로 압출하여 고품화
- ③ 캐스팅 : 고품화된 시트를 연신할 수 있도록 냉각
- ④ 종방향연신 : 전후방에 위치한 롤간의 주속차를 이용하여 종방향 연신
- ⑤ 횡방향연신 : 종방향으로 시트를 예열, 연신, 열처리하여 횡방향 연신
- ⑥ 코로나 : 무극성 폴리프로필렌에 인쇄, 접착성을 부여하기 위한 필름 표면에 극성 처리
- ⑦ 와인딩 : 생산이 완료된 필름을 보빈에 감는 공정

바. 유통경로

- 국내 수입상이 재심사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 (가공 또는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사용함



### 3.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간 동종물품 여부

#### < 검토할 사항 >

-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또는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동종물품의 범위를 정함

#### 관 련 법 규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① 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가. 품명 및 정의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일

나.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함

-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품 간 카달로그 및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시험결과표를 비교한 결과, 제조방법, 제조공정, 제품의 물리적 특성, 제품의 구성요소, 등급 및 품질, 수요자 평가 등 주요 물리적 특성이 동등 또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

####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비교>

시험항목	단 위	CT24-060728K	CT24-060729K	CT24-060730K	CT24-060731K
		국내산	중국산	태국산	인도네시아산
인장강도-가로	MPa	312	257	302	308
인장강도-세로	MPa	138	139	145	140
신장률-가로	%	35	25	29	40
신장률-세로	%	130	130	130	140
두께	μm	12	12	12	12
가열수축률-가로	%	4.6	3.8	3.6	3.7
가열수축률-세로	%	4.4	4	4.1	3.6
흐림도	%	2.48	2.32	2.39	2.28

\* 자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분석('24.7.19), 국내생산자 답변서

**다. 용도**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함

- 국내생산자는 인쇄용, 포장용, 테이프용, 열접착용, 방담용 등 다양한 용도의 포장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은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임

**라. 제조공정**

-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제조공정이 동등 또는 유사함

**마. 유통경로**

-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거래 방식과 대리점(수입자) 단계를 거치는 두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음

**바. 품질 및 소비자 평가**

- 국내생산자는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답변함<sup>3)</sup>
- 답변서를 제출한 수요자<sup>4)</sup>와 수입자<sup>5)</sup>는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구매하고 있음

**사. 검토 종합**

- 조사실 검토 결과, 재심사대상물품은 국내생산품과 비교하여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제조공정 및 유통경로가 동등 또는 유사하며, 품질 및 소비자평가에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으로 판단됨

3) 국내생산자 답변서(24.6월)

4) 수요자인 xxx는 답변서에서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혼용하고 있으나, 중국산은 코로나처리(인쇄 접착성을 부여하기 위한 공정)가 불안정하여 국산을 더 많이 선호한다고 언급했으며, xxx포장지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xxx는 답변서에서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혼용하고 있으나 반덤핑관세로 중국산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국산을 사용할 것이라 답변함.

5) 수입자인 xxx는 국내생산자가 최근 10년 이상 담배포장용 필름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인도네시아산 필름을 수입하여 국내 xxx에 100%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함.

#### 4.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요청 및 검토

##### 관련 법규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 관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 2022-2호) 제22조(부과제외대상물품의 결정기준) ①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는 특정 제품을 덤핑방지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요청에 대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여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당해 요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2.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부과제외요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4. 기타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 가. 피요청인 의견

- 인도네시아산 담배필름 품목중 신제품 개발을 통해 두께나 다운사이징된 제품에 대해 추가 부과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
  - 국내 담배 필름지 수요자인 xxx와 xxx는 지난 2000년 이후 담배 필름의 국내생산이 없어, 인도네시아산 OPP필름을 입찰을 통해 수입해 왔고, 그간 국내 생산 및 판매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동종물품의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

#### (1) 인도폴리産

- (요청내용) 재심사대상물품 수입자인 xxx은, 현재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수입되고 있는 아래품목은 담배포장용 특수제품으로 납품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으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 시켜 줄 것을 요청함 ('24.7.31.)

생산자	모델명
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	DHR16, SHO16, SHR20, SHRV16, DSHS20,18,16

**(2) 아르가産**

- **(요청내용)** 재심사대상물품 수입자인 xxx는, 현재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수입되고 있는 아래 품목은 담배포장용으로만 납품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으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함 ('24.7.31.)

생산자	모델명
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	PSV25, PXAR20

**(3) 트리아스産**

- **(요청내용)** 재심사대상물품 수입자인 xxx 및 xxx는 현재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수입되고 있는 아래 품목은 담배포장용으로만 납품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으므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함 ('24.7.31.)

생산자	모델명
PT Trias Sentosa Tbk.	SBS 23, HSSW18

**나. 요청인 의견**

- 국내생산자는 국내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2000년대 초반 이후 수익성이 맞지 않아 중단되었던 담배 포장용 제품의 판매를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국내 주요 수요자인 xxx가 일정한 주기로(2년) 입찰을 통하여 공급계약을 체결 하는 바 다음 계약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공급자 선정 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외국계 담배제조기업인 xxx까지 판매처를 확장할 것을 계획 중이라 주장

#### 다. 수요자 의견

- 조사실은 인도네시아 피요청인측으로 부터 담배필름용 OPP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요청에 대해 국내 담배 필름 수요자인 A사, B사, C사 등에 향후 국내 생산자의 동종물품 구입가능성 및 입찰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였음('24.12월)
- (A사) '20년~'23년 조사대상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산 OPP필름중 두께 18~23마이크로 필름(관세부과제외 품목)을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 방법은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변함. 입찰절차는 매년 혹은 필요시 규격별로 OPP담배 필름 공급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발굴하여 품질테스트 → 통과시 경쟁입찰 진행 → 최저가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가장 인접한 입찰 시기는 '25년 6월경으로 담배 OPP필름은 담배포장용 특수 제품으로 납품되고 있으나, 국내 업체의 경우 과거 테스트 합격 이력이 없는 바, 현재 까지 거래 희망의사 표시가 없기에 납품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함
- (B사) '21년~'24년 기간중 인도네시아 xxx사의 xxx 규격 필름을 구매한 실적이 있다고 답변함. 담배 포장용 OPP필름 구매 입찰은 B사의 표준 조달 및 공급업체 자격 심사 절차, 시장 상황에 따라 2-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급업체는 비용경쟁력, 기술 역량, 본사 및 계열사 지원 역량을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답변함. 현재 공급 계약은 '25년 기준으로 2년차에 해당하며, '26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 상태라고 답변함. 만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5년 3분기에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고, 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입찰은 '26년 3분기에 진행될 예정임. 한국 시장의 낮은 수요를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요와 통합하여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생산자는 B사의 품질 보증(QA)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이라고 답변함
- (C사) 인도네시아산 OPP필름 수입 물량이 극히 미미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함

라. 조사실 종합의견

조사실은 지난 '24년 12월중 국내생산자 6개사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과거 담배필름용 OPP필름을 생산한 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시설로 향후 담배필름용 OPP필름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함. 6개사의 생산시설(신규시설포함)은 모두 담배필름용 OPP필름 생산이 가능한 시설임을 확인하였고, 수입산과 동등한 가격 경쟁 입찰시 적정가격이라면 언제든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국내 수요자의 답변내용과 국내생산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조사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과거 국내생산자가 OPP필름의 생산을 중단한 사유가 물품의 특성차이가 아닌 수입산의 저가 수입으로 인한 국내 유일 수요자(XXX)의 구매 결정에 따른 공급 중단인 바, 원심과 1차 재심 요청때와는 달리, 국내 생산자의 조사대상 물품의 공급가능성이 있으며, 수입품과 국내산의 대체가 가능하며, 수입산의 우회덤핑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요청인의 부과제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생산실적 여부 및 생산 가능 여부

- 국내생산자는 과거 담배 필름용 OPP필름을 생산한 실적이 있고, 현지 실사를 통해 국내 생산자의 시설과 규모, 공정 등을 확인한 바 인도네시아산 OPP필름과 유사한 특성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일부 수요자(XXX사)가 제시한 내용 중 아시안 시장내 밴더 역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바, 국내생산자 대부분이 다른 해외수출도 겸하고 있어 해외 밴더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다른 모델과의 대체 가능성

- 국내산 담배필름용 OPP필름과 인도네시아산 담배필름용 OPP필름의 차이를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공급자 대리인에 별도의 시험 분석표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실은 국내 생산자가 생산하고 있는 16마이크로 필름지<sup>6)</sup>(담배용이 아닌 일반제품)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담배의 포장필름을 비교한 바, 외견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국내산으로 대체가능하다 판단됨

6) 현재 국내생산자는 담배필름지를 생산하고 있지 아니하나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중인 것으로 확인함

○ 우회덤핑 가능성

- 기존의 반덤핑조사 사례를 볼 때 용도에 따른 부과제외가 된 사례가 없으며, 조사대상 물품의 특성상 담배포장 이외 기타 물품(껌이나 캔디류 등 포장지)의 포장지로 우회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5.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생산자

- 국내생산자는 (주)제이케이머티리얼즈 등 재심사요청인 4개사와 기타 생산자인 율촌화학(주) 등 2개사를 비롯하여 총 6개사임
- 기타 생산자 율촌화학(주)과 디엘에프엔씨(주)는 해외사업관련 원심과 1차 재심사 요청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금번 2차 재심사요청인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심사신청에는 찬성하였고 답변서도 제출함

('23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 중(%)	찬반의사	답변서 제출여부
재심사 요청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xxx	xxx	찬성	제출
	(주)필맥스	xxx	xxx	찬성	제출
	(주)화승케미칼	xxx	xxx	찬성	제출
	(주)삼영	xxx	xxx	찬성	제출
	소계	xxx	xxx		
기타 생산자	율촌화학(주)	xxx	xxx	찬성	제출
	디엘에프엔씨(주)	xxx	xxx	찬성	제출
	소계	xxx	xxx		
총 계		xxx	100		

\* 자료 : 재심사요청서('24.2.20), 국내산업 답변서('24.6월)

나. 수입자

- xxx, xxx, xxx, xxx, xxx, xxx 등

다. 수요자

- xxx, xxx, xxx, xxx, xxx, xxx 등

## 라. 국내산업의 범위

### < 검토할 사항 >

-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확인
-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국내생산자가 수입자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
  - ④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 ③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국내생산자

- 해당 산업의 주무부서(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 확인한 결과,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자는 (주)필맥스, (주)삼영, (주)화승케미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울촌화학(주), 디엘에프엔씨(주) 6개사임

## (2) 국내산업의 범위

-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6개 기업에 모두 '국내생산자 질의서' 발송하였으며, 6개사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 답변서를 제출한 6개사는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심사대상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재심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됨
- 신청자인 (주)필맥스, (주)화승케미칼, (주)삼영,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23년 OPP 필름 생산량이 국내 총생산량의 52%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한다고 볼 수 있고
- 기타 생산자인 울촌화학(주) 및 디엘에프엔씨(주)가 찬성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기 동 조사에서 "국내산업"은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주)필맥스, (주)화승케미칼, (주)삼영,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울촌화학(주), 디엘에프엔씨(주)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사업의 합"으로 함

## 6. OPP 필름 산업현황

### 가. 개관

- OPP 필름은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사용하여 제조된 필름으로 식품 포장, 라벨, 테이프 등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
  - 주로 식음료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의 포장재로 널리 사용되며, 향후 의료, 건축, 전기·전자 관련 산업재 시장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전망
  - OPP 필름의 원재료가 되는 폴리프로필렌 수지는 글로벌 유가 변동, 수급 변화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시장 변화에 민감
- OPP 필름 전·후방산업
  - **(전방산업)** OPP 필름이 생산된 후 포장재와 라벨로 사용되는 포장 산업, 스티커 산업 등이 포함
    - ① 포장산업 : 스낵류, 냉동식품 등 식품포장, 투명성과 습기차단으로 신선도유지 및 소비자에 내용물 확인을 용이하게 함. 담배, 화장품, 의약품 등 비식품 제품의 포장에도 사용되고 인쇄종이에 라미네이션처리로 제품 포장이나 광고용 패넬 등에도 사용
    - ② 라벨링 및 스티커 산업 : 병, 용기, 박스 등이 라벨로 사용, 광고용 스티커, 포스터에 활용
    - ③ 의료 및 제약산업 : 알약 포장, 외과 도구 멸균 포장등 제약산업 의약품 포장재로 사용, 습기나 산소차단으로 약품의 유효성 확보
  - **(후방산업)** OPP필름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석유화학산업, 기계산업 등이 포함
    - ① 원료산업 : OPP필름의 주요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수지<sup>7)</sup>와 필름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화학첨가제<sup>8)</sup> (안정제, 색소, 슬립제, 항정전제)
    - ② 설비 및 기계산업 : OPP필름 제조를 위한 고급 압출기, 연신기, 슬리팅 머신 등 특수화된 기계장비가 필요

7) xxx, xxx, xxx, xxx, xxx 등 국내 대기업 등이 공급 중

8) 중소기업 중심의 정밀화학에서 주로 공급 중

## 나. 세계시장 동향

- Wood Mackenzie 보고서(2023년)<sup>9)</sup>에 따르면, 세계 OPP 필름 생산능력은 '20년 xxx천톤에서 '23년 xxx천톤으로, 연평균 3.3% 증가하였음
- 생산량은 '20년 xxx천톤에서 '23년 xxx천톤으로 연평균 4.4% 증가하였으며, 가동률도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증가하였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OPP 필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등의 생산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심한 가격 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 세계시장의 생산능력 및 수요 >

(단위: 천톤,%)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	<u>1,000</u>	<u>1,022</u>	2.2	<u>1,066</u>	4.2	<u>1,101</u>	3.3	3.3
생산량	<u>1,000</u>	<u>1,052</u>	5.2	<u>1,091</u>	3.7	<u>1,136</u>	4.2	4.4
가동률			2.0		△0.4		0.6	2.2
초과생산								

\* 자료 : Global BOPP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2023년 2월)

## 다. 피요청국(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시장 동향

- Wood Mackenzie보고서에 따르면, 피요청국의 OPP 필름 생산능력은 '20년 xxx천톤에서 '23년 xxx천톤으로, 연평균 2.9% 증가하였음
- 생산량은 '20년 xxx천톤에서 '23년 xxx천톤으로 연평균 6.0% 증가하였고, 가동률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연평균 3.0% 증가하였음

9) Wood Mackenzie는 화학전문 조사기관으로서 글로벌 오일, 가스, 에너지, 금속 등 화학시장에 대한 시장 정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업체임.

< 피요청국 생산능력 및 수요 >

(단위: 천톤,%,%p)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	중국	<u>1,000</u>	<u>1,023</u>	2.3	<u>1,038</u>	1.5	<u>1,075</u>	3.5	2.4
	인도네시아	<u>1,000</u>	<u>1,013</u>	1.3	<u>1,192</u>	17.7	<u>1,192</u>	0.0	6.0
	태국	<u>1,000</u>	<u>1,158</u>	15.8	<u>1,207</u>	4.3	<u>1,378</u>	14.2	11.3
	합계	<u>1,000</u>	<u>1,028</u>	2.8	<u>1,052</u>	2.3	<u>1,091</u>	3.8	2.9
	對세계비중			0.3		△0.9		0.2	△0.4
	전세계			2.2		4.2		3.3	3.3
생산량	중국	<u>1,000</u>	<u>1,070</u>	7.0	<u>1,116</u>	4.3	<u>1,178</u>	5.5	5.6
	인도네시아	<u>1,000</u>	<u>1,021</u>	2.1	<u>1,066</u>	4.4	<u>1,140</u>	6.9	4.5
	태국	<u>1,000</u>	<u>1,440</u>	44.0	<u>1,853</u>	28.7	<u>2,133</u>	15.1	28.7
	합계	<u>1,000</u>	<u>1,074</u>	7.4	<u>1,127</u>	4.9	<u>1,192</u>	5.9	6.0
	對세계비중			1.1		0.5		0.9	1.4
	전세계			5.2		3.7		4.2	4.4
가동률	중국			3.0		1.9		1.3	3.1
	인도네시아			0.6		△8.9		4.8	△1.5
	태국			8.2		9.8		0.4	15.7
	합계			2.0		1.7		1.4	3.0
	전세계			2.0		△0.4		0.6	2.2
초과생산	중국			△6.6		△4.8		△1.2	△4.2
	인도네시아			△1.4		66.2		△15.9	11.2
	태국			1.4		△13.4		13.2	△0.2
	합계			△5.9		△3.2		△1.1	△3.4
	對세계비중			△1.2		△4.3		△1.3	△6.8
	전세계			△3.8		5.4		1.5	0.9

\* 자료 : Global BOPP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2023년 2월)

라. 국내시장 동향

- Wood Mackenzie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PP 필름 생산능력은 '20년 xxx천톤에서 '23년 xxx천톤으로, 연평균 1.5% 감소하였음
- 생산량은 '20년 xxx천톤에서 '23년 xxx천톤으로 연평균 2.9% 증가하였고, 가동률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연평균 4.6% 증가하였음

< 국내시장 생산능력 및 수요 >

(단위: 천톤,%)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	1,000	954	△4.6	954	0	954	0	△1.5
생산량	1,000	1,041	4.1	1,066	2.4	1,091	2.3	2.9
가동률			6.3		1.8		1.8	4.6
초과생산								

\* 자료 : Global BOPP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2023년 2월)

7. 국내수급 현황

- OPP필름의 수요는 '23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소비가 xxx톤으로 xxx%, 해외소비는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 OPP필름의 공급은 '23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공급이 xxx톤으로 xxx%, 해외공급이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 국내수급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 요	국내소비 (국산품 내수 + 총수입)	물량	1,000	1,041	4.1	943	△9.4	914	△3.1	△2.9
		비중								
	금액	1,000	1,174	17.4	1,178	0.3	1,057	△10.2	1.9	
	수출 (국산품 수출)	물량	1,000	809	△19.1	845	4.4	712	△15.7	△10.7
		비중								
	금액	1,000	1,029	2.9	1,155	12.2	961	△16.8	△1.3	
합 계	물량	1,000	1,000		1,000		1,000		△3.5	
	비중									
	금액	1,000	1,160	16.0	1,176	1.3	1,048	△10.8	1.6	
공 급	국내공급 (국산품 내수+수출)	물량	1,000	962	△3.8	859	△10.7	814	△5.2	△6.6
		비중								
	금액	1,000	1,107	10.7	1,098	△0.8	989	△9.9	△0.4	
	수입 (총수입)	물량	1,000	1,274	27.4	1,248	△2.1	1,244	△0.4	7.5
		비중								
	금액	1,000	1,347	34.7	1,447	7.4	1,255	△13.3	7.9	

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8. 비밀취급 여부 검토

### < 검토할 사항 >

- 비밀취급 요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성격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인 경우,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인이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6.5조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1조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2조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비밀취급 요청 서류

(1)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 (요청인) 재심사 요청서, 국내생산자 답변서, 이해관계인 의견서
- (피요청인) 이해관계인 의견서
- (이해관계인) 수입자답변서, 수요자답변서

(2) 정부 서류

- 본 중간 조사보고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나. 이해관계인 제출서류의 정당한 비밀취급 사유 제출 여부

- (요청인)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 (피요청인)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다. 비밀취급 자료 공개시 제출자 및 이해관계인 이익의 침해우려 여부

- (요청인) 국내생산자 답변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요청인의 제조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생산량, 가동률 등 기업 내부정보, 판매가격, 판매수량, 제조원가 등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특정사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구조조정 현황, 별도 구매자료(PCI Wood Mackenzie 보고서) 등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사유에 대해 제출하였고,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 등에 활용되어 요청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피요청인) 피요청인 답변서에서 국내동종물품이나 재심사대상물품의 구매실적, 거래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공개될 경우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를 요청함
- (조사실) 검토결과 조사실은 상기 비밀취급 요청자료와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공개될 경우 경쟁자들이 해당 정보를 직접 영업에 활용하는 등 자료 제출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

## II.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 현재 덤핑조사 진행 중임

### Ⅲ.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 < 검토할 사항 >

-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되는지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부과일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2항에 의한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 다만, 당국이 동 일자 이전에 당국이 덤핑방지조치의 종료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일자 이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재심사대상물품의 누적적 평가 여부

#### < 검토할 사항 >

-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서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인 경우에 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누적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1.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나.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 WTO 반덤핑협정 제3.3조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a)각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하여 확정된 덤핑마진이 제5조제8항에 정의된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며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b)수입상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하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당국은 이러한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한-중 FTA협정 제7.13조 및 한-인도네시아 CEPA협정 제5.10조  
 2개국 이상의 수입품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간 경쟁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 가. 판단기준

-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 시행령은 누적적 평가와 관련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종료재심에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음
- 종료재심은 반덤핑조치 종료시에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을 보고 반덤핑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복수국산 재심사대상물품 수입의 효과 내지는 피해의 누적적 평가 여부도 반덤핑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경쟁조건을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다만, 현재의 경쟁조건도 고려할 것이나, 반덤핑조치 종료시 예상되는 미래의 경쟁조건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검토함

- 한편, 종료재심에서의 누적적 평가는 원심과 달리 반덤핑조치로 인한 효과가 현재 국내시장에서의 재심사대상물품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 내지 반덤핑협정 제3.3조 (a),(b)항의 덤핑물품 미소물량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즉, 원심에서는 수입물량 비중이 3% 이상인 경우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심에서는 3% 미만인 경우에도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나. 경쟁조건 검토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은 물리적 특성 및 용도, 제조공정, 유통 경로,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원심, 1심과 동일)
- 국내수요자는 조사실의 국내수요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이 상호대체 가능하여 동시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단가경쟁력, 공급안정성 등이 고려요인이라고 답변함
- 따라서,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태국산 재심사대상물품은 동종물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간 또는 재심사대상물품간 현재의 경쟁 관계가 향후 비경쟁관계로 변화할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글로벌 생산능력 증가 등으로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간 또는 재심사대상물품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래에도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간 또는 재심사대상물품간 경쟁 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 조사실 의견

- 국내 OPP필름 시장에서 현재 재심사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에 존재하는 경쟁조건 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의 경쟁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금번 2차 재심에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재심사대상물품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2.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 < 검토할 사항 >

- 원심 및 최근 재심 이후의 국내산업 관련 자료를 기초로 물량, 가격 등 지표 분석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효과를 검토
- 물량에 미친 영향 : 덤핑방지조치 이후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및 동종 물품의 판매량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감소하였는지 여부 검토
- 가격에 미친 영향 : 덤핑방지조치 이후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가격 변동에 대하여 검토
-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 생산량·가동률·매출·판매량·재고·시장점유율·가격·이윤·생산성·고용·임금·현금수지·투자·연구개발 등에 미친 영향 검토
- 재심사대상물품 이외 지표에서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검토 : 재심사대상 물품 외의 수입물품의 물량·판매가격·기술개발·국내 수요 및 소비행태의 변화·국내산업의 수출·주요 원자재 가격 등

#### 가. 물량에 미친 영향

-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년 1,000톤에서, '23년 1,847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3.0% 증가하였음
- 동종물품의 판매량은 '20년 1,000톤에서 '23년 825톤으로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2% 감소하였음
- 국내소비는 '20년 1,000톤에서 '23년 914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9% 감소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에는 xxx%로 연평균 9.7%p 증가하였음
  - 중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8.8%p 증가하였음
  - 인니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0.5%p 증가하였음
  - 태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0.4%p 증가하였음
-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7%p 감소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 및 동종물품 판매량 현황 >

(단위 : 톤, %, 변화율(%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물량	국내소비(a=b+e)	<u>1,000</u>	<u>1,041</u>	4.1	<u>943</u>	△9.4	<u>914</u>	△3.1	△2.9	
	총수입(b=c+d)	<u>1,000</u>	<u>1,270</u>	27.0	<u>1,243</u>	△2.1	<u>1,238</u>	△0.4	7.4	
	재심사대상물품수입량(c)	<u>1,000</u>	<u>1,490</u>	49.0	<u>1,718</u>	15.3	<u>1,861</u>	8.3	23.0	
	중국산	<u>1,000</u>	<u>1,589</u>	58.9	<u>1,858</u>	16.9	<u>2,061</u>	11.0	27.3	
	인니산	<u>1,000</u>	<u>1,021</u>	2.1	<u>1,129</u>	10.6	<u>1,283</u>	13.6	8.6	
	태국산	<u>1,000</u>	<u>1,438</u>	43.8	<u>1,544</u>	7.4	<u>1,279</u>	△17.2	8.5	
	기타국産 수입(d)	<u>1,000</u>	<u>1,104</u>	10.4	<u>878</u>	△20.5	<u>757</u>	△13.8	△8.8	
	인도산	<u>1,000</u>	<u>1,169</u>	16.9	<u>587</u>	△49.8	<u>377</u>	△35.9	△27.8	
	필리핀산	<u>1,000</u>	<u>1,293</u>	29.3	<u>1,362</u>	5.4	<u>569</u>	△58.2	△17.1	
	기타국	<u>1,000</u>	<u>1,038</u>	3.8	<u>897</u>	△13.6	<u>953</u>	6.2	△1.6	
	동종물품 판매(e)	<u>1,000</u>	<u>978</u>	△2.2	<u>861</u>	△12.0	<u>825</u>	△4.2	△6.2	
	시장 점유율	재심사대상물품수입량(c)			4.0		3.7		2.0	9.7
		중국산			3.7		3.1		2.0	8.8
인니산				△0.0		0.3		0.3	0.5	
태국산				0.4		0.3		△0.3	0.4	
기타국産(d/a)				0.7		△1.6		△1.2	△2.1	
인도산				0.4		△1.5		△0.6	△1.8	
필리핀산				0.1		0.6		△4.5	△3.9	
기타국				△23.8		△13.7		△0.8	△38.3	
동종물품(e/a)				△4.8		△2.1		△0.8	△7.7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나. 가격에 미친 영향**

-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년 1,000천원, '23년 1,132천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2% 상승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년 1,000천원, '23년 1,195천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1% 상승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동종물품 판매가격보다 톤당 '20년 xxx천원,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 '23년 xxx천원 낮았음

**< 재심사대상물품 및 동종물품 판매가격 현황 >**

(단위 : 천원/톤,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a)		<u>1,000</u>	<u>1,187</u>	18.7	<u>1,358</u>	14.4	<u>1,132</u>	△16.6	4.2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u>	<u>1,136</u>	13.6	<u>1,290</u>	13.6	<u>1,195</u>	△7.4	6.1
가격차이(a-b)				음수감소		음수감소		음수확대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주)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제비용

**다.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1) 생산량 및 가동률**

-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20년 1,000톤에서 '21년 925톤으로 감소한 후 '22년 979톤, '23년 1,056톤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동안 연평균 1.8% 증가함
-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량은 '20년 1,000톤에서, '21년 1,010톤 증가했으나 '22년 949톤, '23년 848톤으로 감소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3% 감소함
- 이에 따라 가동률은 '20년 xxx%에서, '21년 xxx%상승했으나, '22년 xxx% 감소한 이후 다시 '23년 xxx%감소하여 연평균 12.9%p 감소함

**<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현황 >**

(단위 : 톤, %, 변화율(%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u>1,000</u>	<u>925</u>	△7.5	<u>979</u>	5.9	<u>1,056</u>	7.8	1.8	
생산량(b)		<u>1,000</u>	<u>1,010</u>	1.0	<u>949</u>	△6.0	<u>848</u>	△10.6	△5.3	
가동률(b/a)				6.0		△8.1		△10.8	△12.9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2) 판매 및 재고**

- 동종물품의 총출하량은 '20년 1,000톤에서 '23년 841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6% 감소하였음
-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년 1,000톤에서 '23년 825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2% 감소하였음
-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재심사대상기간 중 '20년 1,000톤에서 '23년 1,740톤으로 연평균 20.3% 증가하였고, 총출하 대비 재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연평균 27.4%p 증가하였음

**< 판매 및 재고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변화율(%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기초재고(a)	물량	<u>1,000</u>	<u>763</u>	△23.7	<u>890</u>	16.6	<u>1,435</u>	61.2	12.8	
생산량(b)	물량	<u>1,000</u>	<u>1,010</u>	1.0	<u>949</u>	△6.0	<u>848</u>	△10.6	△5.3	
총출하 (c=d+e+f)	물량	<u>1,000</u>	<u>982</u>	△1.8	<u>888</u>	△9.6	<u>841</u>	△5.3	△5.6	
	금액	<u>1,000</u>	<u>1,095</u>	9.5	<u>1,115</u>	1.8	<u>980</u>	△12.2	△0.7	
내수판매(d)	물량	<u>1,000</u>	<u>978</u>	△2.2	<u>861</u>	△12.0	<u>825</u>	△4.2	△6.2	
	금액	<u>1,000</u>	<u>1,110</u>	11.0	<u>1,110</u>	0.0	<u>985</u>	△11.2	△0.5	
수출(e)	물량	<u>1,000</u>	<u>809</u>	△19.1	<u>845</u>	4.4	<u>712</u>	△15.7	△10.7	
	금액	<u>1,000</u>	<u>988</u>	△1.2	<u>1,156</u>	16.9	<u>937</u>	△18.9	△2.1	
내부대체(f)	물량	<u>1,000</u>	<u>1,420</u>	42.0	<u>1,305</u>	△8.1	<u>1,121</u>	△14.1	3.9	
타계정대체(g)	물량	<u>1,000</u>	<u>1,031</u>	3.1	<u>1,063</u>	3.1	<u>1,049</u>	△1.3	1.6	
기말재고 (h=a+b-c)	물량	<u>1,000</u>	<u>1,150</u>	15.0	<u>1,879</u>	63.5	<u>1,740</u>	△7.4	20.3	
재고율(h/c)	%			1.03		5.72		△0.3	27.4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3) 시장점유율

-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7.7%p 하락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9.7%p 상승하였고, 기타국產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2.1%p 하락함

#### <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 변화율(%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변화율 ( '20~'23)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재심사대상물품		4.0	3.7	2.0	9.7
기타국산 수입		0.7	△1.6	△1.2	△2.1
동종물품		△4.8	△2.1	△0.8	△7.7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년 1,000천원에서 '23년 1,195천원으로 상승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1% 상승하였음
-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20년 1,000천원에서 '23년 1,254천원으로 상승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7.8% 상승하였음
-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상승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의 낮은 판매가격 수준에 영향을 받아 재심사대상기간 중 제조원가 상승(연평균 7.8%)에도 불구하고 동종물품 판매가격(연평균 6.1% 상승)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내수 판매가격 및 제조원가 >**

(단위 : 천원/톤, %, 변화율(%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동종물품판매가격(a)	<u>1,000</u>	<u>1,136</u>	13.6	<u>1,290</u>	13.6	<u>1,195</u>	△7.4	6.1
단위당 제조원가 (b=c+d+e)	<u>1,000</u>	<u>1,132</u>	13.2	<u>1,313</u>	16.0	<u>1,254</u>	△4.4	7.8
재료비(c)	<u>1,000</u>	<u>1,192</u>	19.2	<u>1,404</u>	17.8	<u>1,269</u>	△9.6	8.3
노무비(d)	<u>1,000</u>	<u>996</u>	△0.4	<u>1,078</u>	8.2	<u>1,136</u>	5.4	4.3
경비(e)	<u>1,000</u>	<u>1,049</u>	4.9	<u>1,199</u>	14.3	<u>1,273</u>	6.2	8.4
단위당 제조원가 비중 (판매가격 대비)	—	—	△0.3	—	1.9	—	2.9	4.5
재료비	—	—	2.8	—	2.2	—	△1.5	3.5
노무비	—	—	△1.3	—	△0.5	—	1.2	△0.5
경비	—	—	△1.8	—	0.1	—	3.2	1.5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	<u>1,000</u>	<u>1,187</u>	18.7	<u>1,358</u>	14.4	<u>1,132</u>	△16.6	4.2
동종물품 생산량	<u>1,000</u>	<u>1,010</u>	1.0	<u>949</u>	△6.0	<u>849</u>	△10.6	△5.3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동종물품의 톤당 적정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간의 차이는 '21년 xxx천원, '23년 xxx천원으로 확대되었음
- 재심사대상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의 낮은 판매가격 수준에 영향을 받아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억제된 것으로 판단됨

**<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적정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물품 <sup>10)</sup> 판매가격	<u>1,000</u>	<u>1,187</u>	18.7	<u>1,358</u>	14.4	<u>1,132</u>	△16.6	4.2
동종물품 <sup>11)</sup> 적정 판매가격(a)	<u>1,000</u>	<u>1,219</u>	21.9	<u>1,362</u>	11.7	<u>1,360</u>	△0.1	10.8
동종물품 실제 판매가격(b)	<u>1,000</u>	<u>1,136</u>	13.6	<u>1,290</u>	13.6	<u>1,195</u>	△7.4	6.1
가격차이(c=a-b) (손실단가)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10)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제비용

11) 동종물품 적정 판매 가격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관리비) ÷ (1 - 적정영업이익률)

**(5) 이윤**

-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xxx% 흑자확대, '22년 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xxx% 흑자 감소되었고, '23년에는 △xxx백만원으로 적자 전환됨
-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흑자 확대되었으나, '22년 xxx% 흑자 감소이후, '23년 △xxx%로 영업이익률이 적자 전환됨

**< 내수부문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변화율(%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u>1,000</u>	<u>1,095</u>	9.5	<u>1,115</u>	1.8	<u>980</u>	△12.2	△0.7	
매출원가(b)	<u>1,000</u>	<u>1,061</u>	6.1	<u>1,104</u>	4.1	<u>1,079</u>	△2.3	2.6	
매출총이익(c=a-b)	<u>1,000</u>	<u>1,327</u>	32.7	<u>1,191</u>	△10.3	<u>308</u>	△74.1	△32.5	
판매관리비(d)	<u>1,000</u>	<u>1,233</u>	23.3	<u>1,325</u>	7.4	<u>1,233</u>	△6.9	7.2	
영업이익(e=c-d)			흑자확대		흑자감소		적자전환		
영업이익률(f=e/a)			1.8		△2.3		△10.3	△10.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6) 고용 및 임금**

-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20년 1,000명에서 '23년 1,032명으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1% 증가하였음
- 1인당 평균임금은 '20년 1,000천원에서 '23년 1,083천원으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7% 상승하였음

**< 고용 및 임금 현황 >**

(단위 : 명, 천원,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연평균 고용 인원	생산직	<u>1,000</u>	<u>1,018</u>	1.8	<u>1,003</u>	△1.5	<u>1,013</u>	1.0	0.4
	사무직	<u>1,000</u>	<u>1,025</u>	2.5	<u>1,059</u>	3.3	<u>1,092</u>	3.2	3.0
	계	<u>1,000</u>	<u>1,020</u>	2.0	<u>1,016</u>	△0.4	<u>1,032</u>	1.6	1.1
연평균 1인당 임금	생산직	<u>1,000</u>	<u>1,063</u>	6.3	<u>1,123</u>	5.6	<u>1,077</u>	△4.1	2.5
	사무직	<u>1,000</u>	<u>1,141</u>	14.1	<u>1,188</u>	4.1	<u>1,099</u>	△7.5	3.2
	평균	<u>1,000</u>	<u>1,082</u>	8.2	<u>1,140</u>	5.3	<u>1,083</u>	△5.0	2.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7) 생산성

- 재심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생산량, 1인당 매출액, 1인당 부가가치는 모두 감소하였음
- 1인당 동종물품 생산량은 '20년 1,000톤에서 '21년 990톤으로 감소, '22년 934톤 감소, '23년 822톤 감소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3% 감소하였음
- 1인당 매출액은 '20년 1,000백만원에서 '21년 1,074백만원, '22년 1,098백만원, '23년 949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7% 감소하였음
- 1인당 부가가치는 '20년 1,000백만원에서 '21년 1,149백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2년 1,067백만원, '23년 619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4.8% 감소하였음

< 생산성 관련 지표 >

(단위 : 명, 톤, 백만원,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고용인원(a)	<u>1,000</u>	<u>1,020</u>	2.0		<u>1,016</u>	△0.4	<u>1,032</u>	1.6	1.1
생산량(b)	<u>1,000</u>	<u>1,010</u>	1.0		<u>949</u>	△6.0	<u>848</u>	△10.6	△5.3
총매출액(c)	<u>1,000</u>	<u>1,095</u>	9.5		<u>1,115</u>	1.8	<u>980</u>	△12.2	△0.7
총부가가치 <sup>12)</sup> (d)	<u>1,000</u>	<u>1,172</u>	17.2		<u>1,084</u>	△7.5	<u>638</u>	△41.1	△13.9
1인당 생산량(b/a)	<u>1,000</u>	<u>990</u>	△1.0		<u>934</u>	△5.7	<u>822</u>	△12.0	△6.3
1인당 매출액(c/a)	<u>1,000</u>	<u>1,074</u>	7.4		<u>1,098</u>	2.2	<u>949</u>	△13.5	△1.7
1인당 부가가치(d/a)	<u>1,000</u>	<u>1,149</u>	14.9		<u>1,067</u>	△7.2	<u>619</u>	△42.0	△14.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2) 총부가가치 = 법인세차감전손익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8)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 설비투자액은 '20년 1,000백만원에서 '23년 550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8.1% 감소하였음
- 설비투자액의 주요 내용은, xxx, xxx, xxx, xxx 구입 등임
- 연구개발비는 '20년 1,000백만원에서 '23년 1,155백만원으로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9% 증가하였음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지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u>1,000</u>	<u>938</u>	△6.2	<u>3,906</u>	316.6	<u>550</u>	△85.9	△18.1
연구개발	<u>1,000</u>	<u>1,315</u>	31.5	<u>2,007</u>	52.7	<u>1,155</u>	△42.5	4.9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9) 자본조달능력**

- '22년 영업 이익률 감소 이후 '23년 영업손실이 확대되면서 영업활동을  
통한 자본조달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본조달 능력 관련 지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	1,000	1,095	9.5	1,115	1.8	980	△12.2	△0.7
영업이익			흑자확대		흑자감소		적자전환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라.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

< 검토할 사항 >

- 덤핑방지조치 이후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을 검토함
  - 재심사대상물품 외의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의 검토 등

(1)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기타국產 수입물량은 '20년 1,000톤에서 '23년 757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8.8% 감소하였음
  - 재심사대상기간 중에 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국가로부터 수입물량이 감소한 바 이는 재심사대상물품의 덤핑확대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기타국產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1%p 하락하였음
  - 수입국별로는 재심사대상 기간 중 전체 수입물량의 상위를 차지했던 인도산, 필리핀산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연평균 1.8%p, 3.9%p 하락한 데 비하여, 재심사대상물품의 시장점유율은 9.7% 상승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기타국產 수입물량 및 시장점유율 >

(단위 : 톤, %, 변화율(%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물 량	국내소비(a=b+e)	<u>1,000</u>	<u>1,041</u>	4.1	<u>943</u>	△9.4	<u>914</u>	△3.1	△2.9
	총수입(b=c+d)	<u>1,000</u>	<u>1,270</u>	27.0	<u>1,243</u>	△2.1	<u>1,238</u>	△0.4	7.4
	재심사대상물품수입량(c)	<u>1,000</u>	<u>1,490</u>	49.0	<u>1,718</u>	15.3	<u>1,861</u>	8.3	23.0
	중국산	<u>1,000</u>	<u>1,589</u>	58.9	<u>1,858</u>	16.9	<u>2,061</u>	11.0	27.3
	인니산	<u>1,000</u>	<u>1,021</u>	2.1	<u>1,129</u>	10.6	<u>1,283</u>	13.6	8.6
	태국산	<u>1,000</u>	<u>1,438</u>	43.8	<u>1,544</u>	7.4	<u>1,279</u>	△17.2	8.5
	기타국產 수입(d)	<u>1,000</u>	<u>1,104</u>	10.4	<u>878</u>	△20.5	<u>757</u>	△13.8	△8.8
	인도산	<u>1,000</u>	<u>1,169</u>	16.9	<u>587</u>	△49.8	<u>377</u>	△35.9	△27.8
	필리핀산	<u>1,000</u>	<u>1,293</u>	29.3	<u>1,362</u>	5.4	<u>569</u>	△58.2	△17.1
	기타국	<u>1,000</u>	<u>1,038</u>	3.8	<u>897</u>	△13.6	<u>953</u>	6.2	△1.6
	동종물품 판매(e)	<u>1,000</u>	<u>978</u>	△2.2	<u>861</u>	△12.0	<u>825</u>	△4.2	△6.2
	시 장 점 유 율	재심사대상물품수입량(c)			4.0		3.7		2.0
중국산				3.7		3.1		2.0	8.8
인니산				△0.0		0.3		0.3	0.5
태국산				0.4		0.3		△0.3	0.4
기타국產(d/a)				0.7		△1.6		△1.2	△2.1
인도산				0.4		△1.5		△0.6	△1.8
필리핀산				0.1		0.6		△4.5	△3.9
기타국				△23.8		△13.7		△0.8	△38.3
동종물품(e/a)				△4.8		△2.1		△0.8	△7.7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기타국產의 톤당 판매가격은 '20년 1,000천원에서 '21년 1,030천원, '22년 1,274천원으로 상승한 이후, '23년 1,117천원 하락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0% 상승하였음
- 기타국產의 톤당 판매가격은 재심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보다 '20년 xxx천원,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 '23년 xxx천원 높게 판매되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됨

- 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보다 '20년 xxx천원,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 '23년 xxx천원 낮게 판매되어 동종물품의 가격 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기타국產 수입 판매가격 >**

(단위 : 천원/톤,%)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판매 가격	재심사대상물품(f)	<u>1,000</u>	<u>1,187</u>	18.7	<u>1,358</u>	14.4	<u>1,132</u>	△16.6	4.2
	기타국產 물품(g)	<u>1,000</u>	<u>1,030</u>	3.0	<u>1,274</u>	23.6	<u>1,117</u>	△12.3	4.0
	인도산	<u>1,000</u>	<u>1,279</u>	27.9	<u>1,607</u>	25.6	<u>1,195</u>	△25.6	6.1
	필리핀산	<u>1,000</u>	<u>1,149</u>	14.9	<u>1,378</u>	20.0	<u>1,330</u>	△3.5	10.0
	동종물품(h)	<u>1,000</u>	<u>1,136</u>	13.6	<u>1,290</u>	13.6	<u>1,195</u>	△7.4	6.1
	가격차이(f-h)								
	가격차이(f-g)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주)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제비용

**(2) 국내소비 변화**

- 국내소비는 '20년 1,000톤에서 '23년 914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9% 감소하였고,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도 '20년 1,000톤에서 '23년 825톤으로 연평균 6.2% 감소하였으나 재심사물품의 수입이 연평균 23.0% 증가한 바, 국내소비 감소와 재심사물품의 수입량 확대가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 톤)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u>1,000</u>	<u>1,041</u>	4.1	<u>943</u>	△9.4	<u>914</u>	△3.1	△2.9
총수입		<u>1,000</u>	<u>1,270</u>	27.0	<u>1,243</u>	△2.1	<u>1,238</u>	△0.4	7.4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		<u>1,000</u>	<u>1,479</u>	49.0	<u>1,705</u>	15.3	<u>1,847</u>	8.3	23.0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u>1,000</u>	<u>978</u>	△2.2	<u>861</u>	△12.0	<u>825</u>	△4.2	△6.2

\* 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3) 수출실적

- 국내산업의 수출량은 '20년 1,000톤, '21년 809톤, '22년 845톤, '23년 712톤으로 연평균 10.7% 감소 한 바, 총출하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미만이며 동종물품의 수출실적의 변화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 국내산업의 수출동향 >

(단위 : 톤, 변화율(%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a=b+c+d)	<u>1,000</u>	<u>982</u>	△1.8	<u>888</u>	△9.6	<u>841</u>	△5.3	△5.6
내수판매(b)	<u>1,000</u>	<u>978</u>	△2.2	<u>861</u>	△12.0	<u>825</u>	△4.2	△6.2
수출(c)	<u>1,000</u>	<u>809</u>	△19.1	<u>845</u>	4.4	<u>712</u>	△15.7	△10.7
자가소비등(d)	<u>1,000</u>	<u>1,151</u>	15.1	<u>1,137</u>	△1.1	<u>1,071</u>	△5.8	2.3
수출비중(e=c/a)			△1.4		1.0		△0.9	△1.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주) '자가소비등'은 '내부대체'와 '타계정대체'의 합계임<sup>13)</sup>

### (4) 주요 원자재의 가격

- OPP 필름의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4%~66.8%이며, 재료비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sup>14)</sup> 레진의 가격이 제조원가에 큰 영향을 미침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PP레진의 가격은 '20년부터 '22년까지 상승후 '23년에는 전년대비 13.6% 하락하여 연평균 5.7% 상승하였으며, 동종물품의 전체 재료비도 유사한 증감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8.3% 상승함

13) "타계정대체"는 내부 테스트용 또는 고객 샘플용으로 사용된 제품을 의미하여, "내부대체"는 추가가공을 위해 後공정에 투입된 제품 등으로 사용된 제품을 의미함

14) 석유에서 얻어진 프로필렌을 치글러-나타 촉매로 중합시킨 것으로 비중은 0.92로서 현재 있는 플라스틱 중 가장 가벼우며, 용해 온도도 135 ~160°C이다.

<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PP레진	<u>1,000</u>	<u>1,174</u>	17.4	<u>1,368</u>	16.5	<u>1,182</u>	△13.6	5.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재심사대상기간 중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재료비 상승폭 연평균 8.3% 보다 낮은 연평균 6.1% 상승하였음
- 따라서, 재료비 상승분이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영업이익 감소 등을 통해 국내산업의 손익 악화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동종물품 판매가격과 재료비 추이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동종물품 판매가격(a)	<u>1,000</u>	<u>1,136</u>	13.6	<u>1,290</u>	13.6	<u>1,195</u>	△7.4	6.1
제조원가(b)	<u>1,000</u>	<u>1,132</u>	13.2	<u>1,313</u>	16.0	<u>1,254</u>	△4.4	7.8
재료비(c)	<u>1,000</u>	<u>1,192</u>	19.2	<u>1,404</u>	17.8	<u>1,269</u>	△9.6	8.3
비중(c/b)			2.8		2.2		△1.9	3.1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	<u>1,000</u>	<u>1,187</u>	18.7	<u>1,358</u>	14.4	<u>1,132</u>	△16.6	4.2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마. 덤핑방지조치의 국내산업피해에 미친 영향 종합

- 덤핑방지조치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가 연평균 2.9% 감소한 가운데 덤핑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연평균 23.0% 증가함
- 이에 반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20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2% 감소하였고
  - 시장 점유율도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7%p 감소하였음
  - 영업이익률도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흑자 확대되었으나, '22년 xxx%로 흑자 감소 이후, '23년 △xxx%로 적자 전환됨
- 이는 재심사대상 기간 중 재심사 대상물품의 수입량 증가와 낮은 판매 가격의 영향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되었고,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율을 하락시켜 덤핑방지조치의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3.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의 전망

#### < 검토할 사항 >

-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될 것인지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함

####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부과일(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2항에 의한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이 내에 종결된다. 다만, 당국이 동 일자 이전에 당국이 덤핑방지조치의 종료 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일자 이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 Wood Mackenzie 보고서에 따르면, 재심사대상국의 OPP필름 생산 능력은 20년 1,000천톤에서 '23년 1,091천톤으로 연평균 2.9%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20년 1,000천톤에서 '23년 1,192천톤으로 연평균 6.0% 증가함
- '23년 재심사대상국의 생산능력(xxx천톤)은 세계 총생산능력(xxx천톤)의 약 50%수준이며, 국내산업 생산능력(xxx천톤)의 42.7배가 넘는 수준임
- 재심사대상기간 중 재심사대상국의 생산능력에서 생산량을 제외한 여유생산능력은 추가적인 수출여력을 나타내며, '20년 1,000천톤에서 '23년 901천톤으로 연평균 3.4% 감소하였으나 '23년 기준 국내 내수의 17 배 수준으로 덤핑방지 조치 종료 시 재심사대상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재심사대상공급자의 생산능력 >**

(단위 : 천톤, %, 변화율(%p))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국(a)	<u>1,000</u>	<u>1,028</u>	2.8	<u>1,052</u>	2.3	<u>1,091</u>	3.8	2.9
중국	<u>1,000</u>	<u>1,023</u>	2.3	<u>1,038</u>	1.5	<u>1,075</u>	3.5	2.4
인도네시아	<u>1,000</u>	<u>1,013</u>	1.3	<u>1,192</u>	17.7	<u>1,192</u>	0.0	6.0
태국	<u>1,000</u>	<u>1,158</u>	15.8	<u>1,207</u>	4.3	<u>1,378</u>	14.2	11.3
국내산업(b)			△4.6		0		0	△1.5

\* 자료 : Global BOPP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2023년 2월)

**< 재심사대상공급자의 생산량 >**

(단위 : 천톤, %, 변화율(%p))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국(a)	<u>1,000</u>	<u>1,074</u>	7.4	<u>1,127</u>	4.9	<u>1,192</u>	5.9	6.0
중국	<u>1,000</u>	<u>1,070</u>	7.0	<u>1,116</u>	4.3	<u>1,178</u>	5.5	5.6
인도네시아	<u>1,000</u>	<u>1,021</u>	2.1	<u>1,066</u>	4.4	<u>1,140</u>	6.9	4.5
태국	<u>1,000</u>	<u>1,440</u>	44.0	<u>1,853</u>	28.7	<u>2,133</u>	15.1	28.7
국내산업(b)			4.1		2.4		2.3	2.9

\* 자료 : Global BOPP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2023년 2월)

**< 재심사대상공급자의 수출여력 >**

(단위: 천톤, %, 변화율(%p))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	중국	<u>1,000</u>	<u>1,023</u>	2.3	<u>1,038</u>	1.5	<u>1,075</u>	3.5	2.4
	인도네시아	<u>1,000</u>	<u>1,013</u>	1.3	<u>1,192</u>	17.7	<u>1,192</u>	0.0	6.0
	태국	<u>1,000</u>	<u>1,158</u>	15.8	<u>1,207</u>	4.3	<u>1,378</u>	14.2	11.3
	합계	<u>1,000</u>	<u>1,028</u>	2.8	<u>1,052</u>	2.3	<u>1,091</u>	3.8	2.9
생산량	중국	<u>1,000</u>	<u>1,070</u>	7.0	<u>1,116</u>	4.3	<u>1,178</u>	5.5	5.6
	인도네시아	<u>1,000</u>	<u>1,021</u>	2.1	<u>1,066</u>	4.4	<u>1,140</u>	6.9	4.5
	태국	<u>1,000</u>	<u>1,440</u>	44.0	<u>1,853</u>	28.7	<u>2,133</u>	15.1	28.7
	합계	<u>1,000</u>	<u>1,074</u>	7.4	<u>1,127</u>	4.9	<u>1,192</u>	5.9	6.0
여유생산 능력	중국	<u>1,000</u>	<u>934</u>	△6.6	<u>889</u>	△4.8	<u>879</u>	△1.2	△4.2
	인도네시아	<u>1,000</u>	<u>986</u>	△1.4	<u>1,638</u>	66.2	<u>1,377</u>	△15.9	11.2
	태국	<u>1,000</u>	<u>1,014</u>	1.4	<u>878</u>	△13.4	<u>993</u>	13.2	△0.2
	합계(a)	<u>1,000</u>	<u>941</u>	△5.9	<u>911</u>	△3.2	<u>901</u>	△1.1	△3.4
국내산업(b)			4.1		△9.4		△3.1	△2.9	

\* 자료 : Global BOPP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2023년 2월)

### 나.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가격비교 및 전망

- '23년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덤핑방지관세를 포함하더라도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으로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보다 xxx천원~xxx천원 낮았음
- 덤핑방지관세를 제외할 경우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으로, 톤당 xxx천원~xxx천원 낮아,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동종물품의 가격을 더욱 하락시킬 것으로 보임

####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변화율(%p))

구분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2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 대상물품 판매가격	덤핑관세 포함(a)	<u>1,000</u>	<u>1,187</u>	18.7	<u>1,358</u>	14.4	<u>1,132</u>	△16.6	4.2
	덤핑관세 미포함(b)	<u>1,000</u>	<u>1,186</u>	18.6	<u>1,357</u>	14.4	<u>1,133</u>	△16.5	4.2
동종물품 판매가격(d)		<u>1,000</u>	<u>1,136</u>	13.6	<u>1,290</u>	13.6	<u>1,195</u>	△7.4	6.1
가격차이	a-d			음수감소	음수감소			음수확대	
	b-d			음수감소	음수확대			음수확대	
가격비율	a/d								
	b/d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주)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제비용

**다.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 (요청인 주장) 중국의 과잉 공급된 OPP필름의 물량이 제3국으로 덤핑 수출되어, 인도네시아 및 태국도 이에 따른 수입규제중이며 우리나라 덤핑방지 조치 종료 시 중국의 잉여 생산량이 국내로 수입되어 국내산업 피해가 확대될 것임
- (조사실 검토의견) WTO 반덤핑조치현황을 조사한 바, 인도네시아는 태국, 베트남에 대해 '17년부터 OPP필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태국도 '22년부터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에 있는 바, 덤핑방지 종료 시 중국의 공급과잉 생산 물량이 對한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음

**< 재심사대상국의 OPP 필름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

국 가	대상국가	일 자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기 타
인도 네시아	태국	'17.1.9~'27.1.8	28.4%	5년	종료재심 연장
	베트남	'17.1.9~'27.1.8	3.9%	5년	종료재심 연장
태국	중국	'22.3.10~'27.3.9	5.49~32.80%	5년	
	인도네시아	'22.3.10~'27.3.9	0~15.32%	5년	
	말레이시아	'22.3.10~'27.3.9	0~32.80%	5년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WTO 공식 홈페이지

## 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검토 종합

- 조사실은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피해에 미친 영향,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가격비교 및 전망,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을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덤핑방지조치로 인해 1차 재심 기간까지는 재심사 대상물품의 수입량은 감소하여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조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최근 2차 재심사 대상기간 이후 재심사대상국의 공급과잉과 제3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재심사대상물품의 국내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됨
-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23년 기준 재심사대상국의 여유생산능력은 추가적인 수출여력을 나타내며, '20년 xxx천톤에서 '23년 xxx천톤으로 연평균 3.4% 감소하였으나 '23년 기준 국내 내수의 17배 수준으로 덤핑방지 조치 종료 시 재심사대상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음
- **(가격비교 및 전망)**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재심사대상물품의 저가 수입 확대로 국내산 동종 물품과의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산 동종 물품 판매 가격의 하락 내지 상승 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3국 수입규제조치)** WTO 반덤핑조치현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태국, 베트남에 대해 '17년부터 OPP필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태국도 '22년부터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에 있는 바, 덤핑방지 종료 시 재심사대상국의 공급과잉 생산물량이 對한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음
-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피해에 미친 영향,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가격비교 및 전망,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IV.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1. 덤핑률 수준 : 검토중

### 2.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 본 조사건은 2차 재심으로, 덤핑방지조치로 인해 1차 재심 기간까지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감소하여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조치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최근 2차 재심사 대상기간 이후 재심사대상국의 공급과잉과 제3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재심사대상물품의 국내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2차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에 의한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 증가와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은 원심의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인 xxx%를 적용<sup>15)</sup>하는 것이 타당함

### 3.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검토중

15)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22-2호) 제21조(산업피해 구제수준의 산정) 제4항제2호 :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적용함.

참고

OPP필름 2차 재심 산업피해 조사경과

- '24.02.20.: 요청인(㈜필맥스, 삼영화학공업㈜, ㈜화승케미칼, 제이케이머티리얼즈㈜)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요청 (기획재정부)
- '24.03.19. : 관세청 통관자료 요청
- '24.04.26. : 재심사 개시 공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107호, 재심사 개시일 : '24. 4. 26)
- '24.05.10. : 국내 이해관계인 질의서 송부
- '24.05.30. : 재심사 개시 보고 (제448차 무역위원회)
- '24.06.28. :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
- '24.08.13. :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 '24.08.20. : 피요청인 및 요청인 의견서 제출
- '24.09.03. : 공청회 개최 공고 (무역위원회 공고 제2024-15호)
- '24.10.17. : 공청회 개최
- '24.11.21. : 국내 수요자 추가 질의서 송부
- '24.12.16~17. : 국내 수요자 답변서 제출
- '25. 01.22. : 중간보고서 수정본 이해관계인 통보
- '25. 02.20. : 무역위 최종 판정 예정

# 무역조사실

무역조사실장 정석진

## 조사단

### [국내산업피해조사]

조사단장	산업피해조사과장	류동희
조사관	산업피해조사과	우혜영

### [덤핑사실조사]

조사단장	덤핑조사과장	김민정
조사관	덤핑조사과	김학배